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면접 단계에서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 >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7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면접 단계에서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30일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

Ⅲ. 검토의견

1. 면접 단계에서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면접에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u>수집하여서는</u> 아니 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 ----- ----- -----수 <u>집 또는 면접 시험에서 질문하여서는</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 ① (생략)	제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	3. -----

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 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u>수집한</u> 구인자 ③・④ (생략)	----- ----- ----- -----수집 또는 면접 시 <u>험에서 질문한</u>----- ③・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기초심사자료에의 기재 요구 또는 입증자료¹⁾ 제출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수집을 기초심사자료 또는 입증자료 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면접 단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이 이루어지는 관행은 채용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도적 규율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며, 특히 현행법이 서류 단계 개인정보 요구

1) 「채용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만 규율하고 있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지 범위를 면접 질문까지 확대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